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자격대여행위에 따른 이익의 필요적 몰수 등 규정 >
■ 김위상위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3870호

2024.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2024년 9월 10일 김위상위원이 대표발의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2024년 9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인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공인노무사와 그 상대방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공인노무사 자격의 불법 대여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는 「형법」상의 임의적 몰수를 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자격의 불법 대여로 생긴 이익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인노무사 자격대여행위 등으로 발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공인노무사 자격대여행위 등의 처벌 대상에 노무법인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안 제28조제2항제3호), 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한 자(노무법인을 포함함)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함(안 제28조제4항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8조(벌칙) ① (생략)	제28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대여등을 받은 상대방	3. 제20조의3제1항(제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자 ----- ----- -----

3의2. ~ 5. (생략) <u><신설></u>	3의2. ~ 5. (현행과 같음) <u>④ 제2항제3호의 죄를 지은 자 (제7조의10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u>
-------------------------------------	---

2. 검토의견

현행법은 공인노무사 자격대여행위 및 그 알선행위(이하 ‘자격대여 행위등’)를 금지하고,¹⁾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²⁾ 범죄이익의 환수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에 관하여는 「형법」 상 몰수·추징에 관한 일반규정(임의적 몰수·추징)에 따른다고 볼 것임.

1) 제20조의3(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① 공인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貸與)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인노무사로부터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빌려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28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대여 등을 받은 상대방

3의2. 제2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대여 등을 알선한 사람

「형법」은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이를 대가로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³⁾ 대법원은 「형법」에 따른 임의적 몰수의 대상은 ‘물건’으로 한정되고 예금채권 등 재산상 이익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음.⁴⁾

개정안은 위와 같이 현행법상 공인노무사 자격대여행위등으로 인해 재산상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그 이익의 몰수·추징이 곤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인노무사법」에 범죄이익에 관한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자격대여행위등은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그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효과적인 범죄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것임.

3)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③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電磁記錄)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4) 대법원 2023.01.12 선고 2020도2154
…형법 제48조는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및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몰수할 수 있도록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357조 등의 규정과는 구별된다.…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범행의 보수를 받는 경우 피고인은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취득할 뿐이어서 이를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의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계좌송금을 통해 취득한 범행의 보수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 규정한 추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몰수는 타 형벌에 부가하여 과하는 형(刑)의 일종에 해당하는 만큼 어떤 범죄에 대하여 어떻게 부가할 것인지⁵⁾에 관하여는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볼 것임.⁶⁾

한편, 자구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안 제28조제2항제3호는 자격대여 행위등에 관한 처벌 규정에 노무법인의 자격대여행위등에 관한 처벌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노무법인에 대하여도 필요적 몰수·추징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법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관세법」의 사례와 같이 양벌규정을 인용하여 몰수·추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임.⁷⁾⁸⁾

5)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할 것인지, 임의적 몰수·추징을 규정할 것인지 등

6) 헌법재판소 2010. 5. 27. 선고 2009헌가28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 또한,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형의 일종으로서 어떤 범죄에 대하여 몰수형을 규정할 것인지의 여부와 이를 임의적으로 할 것인지 또는 필요적으로 할 것인지도 입법자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7) 「관세법」 제279조(양벌 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장에서 규정한 벌칙(제277조의 과태료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2조(몰수·추징) ① 제269조제1항(제271조제3항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② 제269조제2항(제271조제3항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69조제3항(제271조제3항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제274조제1항제1호(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다만, 제26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참고로, 2019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자격대여행위에 따른 공인노무사회 징계 건수는 3건이고,⁹⁾ 전문자격사의 자격대여행위등에 관한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한 사례는 「변호사법」,¹⁰⁾ 「공인회계사법

해당하는 물품은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54조의 보세구역에 제157조에 따라 신고를 한 후 반입한 외국물품
2. 제156조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외국물품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4. 그 밖에 몰수의 실익이 없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다만, 제274조제1항제1호 중 제269조제2항의 물품을 감정한 자는 제외한다.
- ④ 제279조의 개인 및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범인으로 본다.

8) 「관세법」과 같이 별도의 몰수·추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 양벌규정에서의 노무법인이 얻은 이익 등을 몰수·추징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9) 자격대여행위 징계 사례

연도	징계사유	징계종류
2020	다른 사람에게 공인노무사 자격 명의를 대여, 그 대가로 월 6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 의뢰를 유치	직무정지 6개월
2022	부당하고 구제신청 사건을 수임하면서 심문회의에 직무보조원을 참석시킴	견책
2024	사건알선업자를 이용해 사건을 유치하였고, 사무소 명칭을 사용하여 공인노무사 직무를 수행케 하였으며, 고용보험 지원금 등 부정수급	등록취소

10) 「변호사법」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③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제109조제1호, 제111조 또는 제112조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8조의16(준용규정) 법무법인(유한)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4조,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2항 및 제10장을 준용한다.

제58조의30(준용규정) 법무조합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4조,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2항, 제58조의9제1항, 제58조의12 및 제10장을 준용한다.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제116조(몰수·추징)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제109조제1호, 제110조, 제111조 또는 제114조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11) 「세무사법」 12)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13)

고용노동부는 현재 공인노무사 자격대여행위등으로 발생한 이익은 「형법」상 임의적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나 법관의 재량에 따라 몰수·추징 여부가 결정되므로 범죄 수익에 대한 필요적 몰수를 위해 법 규정 신설의 필요성이 있고, 다른 자격사에 대하여도 명의대여 등의 금지 및 법 위반에 따른 몰수·추징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견이 없다는 의견임.

11) 「공인회계사법」 제53조(벌칙) ①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이사, 소속공인회계사 및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략)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공인회계사로서 제22조제1항(제40조 및 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자

2의2. 제22조제2항(제40조 및 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 행위를 알선한 자

3. (생략)

제55조(몰수·추징 등)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제2호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12) 「세무사법」 제12조의3(명의 대여 등의 금지) ① 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세무사로부터 성명 또는 상호를 빌려 세무대리를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16(세무법인에 관한 준용) ① 세무법인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4조의2, 제15조 및 제17조제4항(세무법인이 제16조의15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는 “세무법인”으로 보고, 제17조제4항중 “징계”는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로 본다.

제22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2조의3제1항(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등을 빌려준 자

제25조(몰수·추징) 제12조의3(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등을 빌려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13) 외국법자문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에 대하여도 유사한 내용의 자격 대여행위 등에 대한 몰수·추징에 관한 규정이 있음.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자격대여라는 행위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불법 이익 몰수를 규정하는 것은 적정하고, 개정안이 무자격자의 직무수행을 방지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공인노무사에게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공인노무사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540
